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일자 : 2007. 1. 2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및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이 신설(2005. 5. 31)되어 지하수의 적극적인 보전관리 및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사용자에게 소정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고
- 나.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등)의 개정(2005.5.31)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함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안 제2절)
- ▷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오염평가보고 등
 - ▷ 위원장 포함 11인이내, 위원장은 도시국장, 임기 2년
- 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안 제3절)
- 다.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안 제4절)
- ▷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함.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 '07년: 150원/톤, '08년이후: 160원/톤

라. 「지하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규정
(안 제5절)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2·제30조의3·제40조 등

나. 예산관련 : 사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세무과, 재무과 협의완료(2006.11.08)

라. 입법예고 : 2006. 11. 10 ~ 11. 30(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마. 기 타 : 조례표준안 시달(시 환경보전과-8465, 2006.6.14)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완료(2006.12.18) ▷ 원안가결

사하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2007.1.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2·제30조의3·제41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4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2절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추진단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4절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의 1회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4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5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과태료

제16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8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관할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1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22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년 월 일

진술인 :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사하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체납 과태료 금액	금 (₩	원)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